

의안번호	2219851
의 퇴 인	송재봉의원
회 답 일	2026.9.22.
추 계 번호	26D3424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4(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“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”라 함)를 작성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8조의5(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“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”라 함)를 작성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의4(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조의5(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	

2. 상세 사유

□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의 작성(안 제8조의4 및 안 제8조의5 신설)

○ 현재 「국가재정법」¹⁾ 등에 따라 국가 예산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

서(또는 기금운용계획서)는 작성되고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·결산에 대한 관계 법률이 부재함

-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현행법 제8조²⁾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기대효과, 성과목표 등에 대한 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 수행이 필요하고, 이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인력 증원 또는 평가를 위한 연구·용역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규모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, 각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·결산제 운영 관련 조례가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등 현시점에서 제반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이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-
- 1) 「국가재정법」 제16조(예산의 원칙)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~5. (생략)
 6. 정부는 예산이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(이하 "온실가스"라 한다)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2) 현행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 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